

화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4. 10 화순군수
- 나. 회부일자 : '97. 4. 10
- 다. 상정일자 : '97. 4. 17 (제5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정부웅
- 나. 제안사유
 -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키 위함.
- 다. 주요내용
 - 제3조 제1항중 "지방의회"를 "의회"로 하고 제2항중 "군수는"을 "군수가"로 개정
 - 제6조중 "매년 4분기별"을 "매분기별"로 개정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민병항)

- 동 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키 위한 개정 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답변 요지

"생략"

5. 토론요지

"생략"

6. 심사결과

「원안가결」

7. 첨부 : 화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

화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37-39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4. 10

제출자 : 화순군수

1. 제안이유

- 조례의 불합리한 용어 정비

2. 주요골자

- 조례 제3조 "지방의회"를 "의회"로 하고
- 조례 제6조중 "매년 4분기별"을 "매년 매분기별"로 개정

화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중 "지방의회"를 "의회"로 하고, 제2항중 "군수"는 "을 "군수가"로 한다.

제6조중 "매년 4분기별"을 "매분기별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
<p>제3조 (채무보증의 승인)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<u>지방의회의</u>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.</p> <p>② <u>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</u>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 보증승인 통지서 (별지 제2호 서식)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 (보고) 채권자는 채무액, 이자,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 (별지 제5호 서식)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경과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 (채무보증의 승인) ①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② <u>군수가</u> - - - <u>의회</u>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제6조 (보고)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<u>매분기별</u>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